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미용실 및 이발소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었을 경우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기준

목적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미용실 및 이발소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Hair Salons and Barbershop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재개하는 미장원 및 이발소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도입하여 미장원 및 이발소 소유자/운영자, 직원, 하청계약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은 미용실, 이발소 및 기타 유사한 미용 서비스 사업체를 포함한 미용 서비스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네일 살롱, 문신 팔러 또는 텍수염 손질, 콧수염 손질, 페이셜, 매니큐어/패디큐어, 화장, 스테딩, 트위징 또는 왁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비이발 관련 개인 관리 서비스 또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은 최소 요구 사항일 뿐이며 모든 고용주는 추가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주정부의 재개 2단계 시점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을 따르며, 본 지침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는 미용실 및 이발소와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이를 미용실 및/또는 이발소 운영 안전 계획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경

2020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202호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경우 개인 사이에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Cuomo 주지사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이발소, 미용실, 문신 또는 피어싱 팔러 및 관련 개인 관리 서비스는 대중의 일원에 대해 영업을 중지하도록 지시한 행정 명령 202.7호를 선포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네일 기술자, 미용사 및 피부관리사, 전기 분해 요법 제공 및 레이저 제거 서비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0일에 Cuomo 주지사는 모든 비필수 사업체에 사무실 내 직원 직능을 종료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 202.6호를 선포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ESD) 지침에 따라 규정된 필수 기업은 대면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가능한 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2일 Cuomo 주지사는 필수 사업체에 직장에 있는 직원을 위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16호를 선포했으며, 업무 중 고객 또는 대중의 일원과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Cuomo 주지사는 행정명령 202.17호를 발행하여 만 2세 이상으로 의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 착용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않을 때 코와 입을 마스크나 얼굴을 덮는 천으로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Cuomo 주지사는 2세 이상이며 의학적으로 페이스 커버 착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또는 사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 중 코와 입을 가리는 페이스 커버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02.18호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승객이 있는 동안 코와 입을 덮는 안면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대중 또는 민간 교통의 모든 사업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사업체 운영자/소유자에게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202.34를 선포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Cuomo 주지사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 분석을 기반으로 뉴욕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주지사는 지역 분석 과정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과 건강 관리 시스템, 진단 검사, 접촉 추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공중 보건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 11일 Cuomo 주지사는 지역별 계량 분성 및 지표에 근거하여 재개 1단계가 2020년 5월 15일 뉴욕의 몇몇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는 재개 2단계가 주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뉴욕 주민, 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안전한 재개를 위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해 주의 광범위한 자료 수집 활동을 집계하는 새로운 조기 경고 대시보드를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이 2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미용실과 이발소는 승인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체에 대한 안전 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장에 게시한 경우에만 재개가 허용될 것입니다.

다음 기준 외에도 사업체는 DOH가 공표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및 지시를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 주정부에서 발행한 다른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 최신 지침이 적용됩니다.

뉴욕주에서 미용실 및 이발소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기준

미국 장애인법(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환경 보호국(EPA) 및 미국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SHA)의 해당 최소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용 가능한 연방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최소 주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고는 미용실 또는 이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 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미용실 및 이발소에 적용됩니다. 미용실 및 이발소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어느 경우든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용실 및 이발소 소유자는 이 문서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고 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건강 및 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용실과 관련된 기존 기준은 [여기를](#) 클릭하여 국무부 웹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발소와 관련된 기존 기준은 [여기를](#) 클릭하여 국무부 웹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사람, 장소 및 진행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미용실 또는 이발소 내에 있는 인력 및 고객 수가 고객을 포함하여 점유 증명서에 명시된 특정 구역의 최대 점유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되고, 고객은 이발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입장할 수 있어야 하며, 단, 고객의 나이는 2세 이상이고 해당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활동에 더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예: 이발 서비스 제공, 약속 데스크 운영 또는 금전 등록기)가 아닌 한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 간에 항상 최소 **6피트**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고객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예: 금전 등록기에 입금, 전달할 물건 포장) 그리고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에 대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과 안면 가리개 및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일회용 또는 기타 수제 안면 가리개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PE)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한 안면 가리개는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OSHA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N95 호흡기 또는 기타 PPE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미용실 소유자는 지속적으로 19 NYCRR Sec. 160.11을 준수하고 각 작업대에서 PPE(예: N-95 또는 N-100 마스크)의 적절한 공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용을 수정하고/하거나 작업대 및 직원 좌석 영역의 수를 제한하여 직원들이 모든 방향(예: 좌우로 나란히 그리고 서로 마주 보는 경우)에서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매 사용 시 세척 및 소독을 하고 작업대를 공유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좌석이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합니다(예: 이발사 의자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발사 의자는 서로 **6피트** 간격을 유지해야 함).
 - 가능한 경우 개인 관리 업소에서 직원 작업대 사이에(예: 이발사 의자 사이) OSHA 지침에 따라 물리적 장벽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플렉시 글라스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분할기 또는 칸막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약속 데스크 및 체크아웃 레지스터에서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공기 흐름, 난방, 냉방,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강 또는 안전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영역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서는 안 되는 의료 또는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개인에게 의료용 문서 또는 기타 문서를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시에 해당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한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좁은 공간(예: 현금 등록기 뒤, 엘리베이터, 재고 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더라도 한 명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점유 인원 수는 해당 공간의 최대 점유 인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최대한 환기(예: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 둔 상태)하여 환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비접촉식 지불 옵션이나 선불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보상 카드 및 모바일 장치 사용을 최소화하십시오(예: 고객이 현금 대신 전자 결제를 통해 팁을 주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에 화살표가 있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공동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및 일반적으로 줄서기가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예: 약속 데스크/현금 등록기 영역 앞, 건강 선별검사대, 휴게실) 모든 영역에서 6피트 거리두기를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표시를 게시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표지판 또는 장벽을 설치하여 일방 통행을 권장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 및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영역(예: 출퇴근 시간 기록대, 건강 선별검사대, 휴게실, 금전 등록기 영역)에 6피트의 거리두기를 나타내는 표지판 및 거리 표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는 고객과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예약에 한함”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대기실을 폐쇄하고 가능한 한 줄이 형성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한 고객에 대해 약속 시간까지 차 안에서 또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진 밖에서 기다리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책임 당사자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약속 시간을 부여하고 약속 시간까지 차 안에서 또는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진 밖에서 기다리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미용실 또는 이발소 내부 및 외부에 DOH 코로나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하는 경우 직장 또는 환경에 따라 고유한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사용하여 직원과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 코나 입을 마스크나 천 안면 가리개로 덮으십시오.
 - PPE를 올바르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코로나19의 증상 또는 이에 대한 노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하십시오.
 - 손 위생, 청소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 적절한 호흡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대면 모임(직원 회의, 휴게실, 재고 실 등)을 제한하고 CDC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2019(코로나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상 회의 또는 원격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회의를 통풍이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개최하고 직원들이 서로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함을 확인합니다(예: 의자가 있는 경우 의자 사이에 간격을 두고, 의자를 하나 걸러 앉으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 및 휴게실과 같은 소규모 구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관행을 구현해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점유 인원 수를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 게시 및 제도(예: 점유 시 표시)를 개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들이 모임(예: 휴식 시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즉, 6피트 공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C. 작업장 활동

- 위에 언급된 이발 서비스 사업체 및 활동 정의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이발, 염색 또는 스타일링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며, 금지된 서비스는 턱수염 손질, 콧수염 손질, 페이스, 네일 서비스, 화장, 스테딩, 트위징 또는 왁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인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원으로만 인원 제한.
 - 작업장 개장 시간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현장 인력 감원.
 - 계획 변경(예: A/B 팀, 도착/출발 시간에 시차를 둠). 및/또는
 - 가능한 경우 배칭 작업을 통해 직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동시에 손 접촉 횟수(예: 재고 선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인원 밀도를 줄이고 청소 및 소독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영업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D. 이동 및 상업

- 책임 당사자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비필수 방문객을 금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대 수용 인원 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설 내 통행량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달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 상품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비접촉식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여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사가 차량의 운전실에 머물러 있거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 진행 중 배송 작업자에게

최소한 천 안면 가리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상된 활동에 적합한 허용된 PPE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적재 상품을 이전하기(예: 배송 기사로부터) 전후 손을 소독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예: 품목을 적재하기 전에 손을 소독하고 모든 품목을 적재한 후 다시 손을 소독하여 마무리함).
- 책임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 셀프 서비스 바와 샘플러.
 -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카페 및 식당/음료 서비스 구역.
 - 식수대.
 - 잡지 영역.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병에 걸렸을 때 집에 머무르도록 권장하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II. 장소

A.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할 때(예: 이발 서비스) 모든 직원이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 안면 가리개 그리고 안면 보호구 또는 안전 고글을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도 고객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예: 금전 등록기에 입금)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작업장 활동에 필요한 PPE 외에,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입수해야 하며 업무 수행 중 직원에게 무료로 허용되는 해당 안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교체가 필요하거나 필수 방문자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면 가리개, 마스크 및 기타 필요한 PPE를 적절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및 얼굴 보호대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소재 페이스 커버 및 기타 유형의 PPE에 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에 대한 정보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안면 가리개 요구 사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N95 마스크가 통상적으로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우 천이나 수제 마스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OSHA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직원이 개인 소유의 추가 보호용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책임 당사자가 다른 방식으로 직원의 업무 특성상 직원에게 추가적인 보호용 PPE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를 금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모든 해당 OSHA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위, 분무기 병, 클리퍼 및 공유 표면의 접촉 등 물체의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된 물체 또는 자주 접촉하는 표면과 접촉할 때 직원에게 장갑(적절한

업무용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직원에게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공유하는 경우 장비는 사용 간에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PPE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벗고, 세척하고(해당되는 경우),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가 고객에게 가리개를 제공하는 경우(예: 이발 앞치마) 그러한 가리개가 청결하고, 새로 세탁되거나, 사용 시마다 소독하거나 일회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청결한 작업복 또는 가운을 착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거나 씻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매번 예약 고객을 받을 때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2세 미만이거나 의학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견딜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고객이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 마스크 또는 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이발 서비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귀에 거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여 서비스 중에 안면 가리개를 제거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또는 이발사가 특정 부위에 도달하기 위해 안면 가리개 한 쪽을 일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코와 입 앞으로 얼굴을 덮고 있어야 합니다.

B.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민간 및 공공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CDC 및 DOH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날짜, 시간 및 청소 및 소독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대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흐르는 온수 및 일회용 종이 타월.
 - 소독제: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지역에 대해 60%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용실이나 이발소 전체에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후에 비누와 물로 20초 동안 손을 씻음으로써 손 위생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 소독대 근처에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한다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손 소독제는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PPE를 포함하여 더러운 품목을 폐기할 수 있도록 미용실 또는 이발소 주변에 쓰레기통을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및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적합한 청소 및 소독용 비품을 제공하고 직원이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에 따라 이러한 표면의 사용 전후에 손 위생을 준수하여 이러한 비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영역과 자주 접촉하는 표면에 대해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최소한 교대 후 매번,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수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횟수에 따라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간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화장실 사용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최소한 고객이 바뀔 때마다, 등재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작업대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효과적인 것으로 EPA에서 확인한 뉴욕주 등재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세척 또는 소독 제품 또는 세척 및 소독 활동으로 인해 안전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료 또는 장비가 손상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손 소독대를 설치하고/하거나 충분한 일회용 장갑을 제공하고/하거나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완전한 작업대 청소를 위해 약속 사이에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예: 15 분).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또는 고객이 코로나19에 대해 확진된 경우 노출된 구역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해 최소한 통행량이 많은 모든 구역 및 밀접 접촉면(예: 자동 판매기, 난간, 화장실, 문 손잡이)을 포함하여 해당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의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가 영향을 받는 구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영업을 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과 창을 여십시오.
 - 24시간이 지난 후 청소 및 소독을 하십시오. 24시간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해당 구역을 적절히 청소하고 소독한 후에는 재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근접 또는 밀접" 접촉에 대한 정보는 DOH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공공 또는 민간 근로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를 참조하십시오.
-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 시설을 방문했거나 사용한 후 8일 이상 지났다면 추가 청소 및 소독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해야 합니다.
- 공유 물체(예: 지불 장치), 구역 및/또는 표면(예: 문)의 취급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구역 및 물체를 최소한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작업대 및 도구(예: 브러시, 의자, 머리 받침대, 가위)를 고객이 바뀔 때마다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음식 및 음료(예: 뷔페식 식사)를 금지하고, 점심을 집에서 가져오도록 권장하고, 직원이 식사를 하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C. 단계적 재개

- 책임 당사자는 생산 또는 작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기 전에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개 활동을 권장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운영에 제공하기 위해 처음 재개할 때 직원의 근무 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직원 수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 의사소통 계획

- 책임 당사자는 주정부에서 발행한 업계 지침을 검토하고 이해했으며 이를 이행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방문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 교육, 표지판 및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관된 수단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텍스트 및 이메일 그룹 및 SNS 개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PPE 사용, 특히 안면 가리개 착용에 관한 CDC 및 DOH 지침을 준수하도록 구두 의사소통 및 표지판을 통해 권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개인 보호 장비의 적절한 사용, 청소 및 소독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인에게 상기시키도록 미용실 또는 이발소 내외부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III. 진행

A. 선별 검사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고객에게 직접 또는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수행하는(예: 이발) 직원이 진단 테스트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직원은 미용실/이발소가 소재한 지역이 주정부의 2단계 재개에 유지되는 한 14일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에게 직접 또는 자신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문의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 및 가능한 경우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일일 건강 선별 검사 관행을 구현해야 하지만, 그러한 선별 검사는 고객 및 배달 직원에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선별 검사는 직원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가능한 한 원격으로(예: 전화 또는 전자 설문 조사)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직원이 서로 밀접 또는 근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선별 검사를 조정해야 합니다.
 - 최소한 모든 직원과 방문객에게 선별 검사가 필요하며 근로자 또는 직원 또는 방문객이 다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a)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자 또는 코로나19 유증상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했음을 알고 있음.
 - (b)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음. 및/또는
 - (c)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의 증상을 경험했음.
- 책임 당사자는 고객에게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하지 않았고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지 않았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최신 정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Symptoms of Coronavirus\)](#)"에 대한 CDC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 또는 그 외의 시간을 포함하여 직원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 위에서 언급한 질문 사항에 대한 그들의 응답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여부 및 일시를 즉시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선별 검사 설문지 외에도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또는 DOH 지침에 따라 매일 온도 점검을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건강 데이터(예: 온도 데이터) 기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온도 점검을 포함하여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미용실 또는 이발소에 입장하려고 하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 또는 방문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CDC, DOH 및 OSHA 프로토콜에 정통한 것으로 운영자가 식별한 개인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검사자는 최소한 안면 마스크를 포함하여 PPE를 제공 받아 사용해야 하며 장갑, 가운 및/또는 안면 보호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대해 양성이거나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작업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평가 및 검사를 위해 담당 의료진에게 문의하라는 지시와 함께 귀가시켜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검사 결과에 대해 해당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건강 관리 및 검사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또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할 때의 절차 및 정책에 관한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이후 직장에 복귀하는 공공 및 민간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직원 설문지를 접수하고 검토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활동, 위치, 교대 또는 요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중앙 연락처를 지정하고 이러한 연락처는 설문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과 방문자가 나중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앓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당사자로서 식별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안전 계획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포함하여 책임을 지는 현장 안전 모니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작업 현장 또는 구역의 다른 개인과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 및 방문자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적절한 PPE 또는 비접촉식 수단을 통해 수행되는 배송은 제외합니다. 직원이 코로나19로 진단된 경우 모든 접촉자를 식별, 추적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일지에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의 접촉자 추적 노력에 협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접촉자 추적을 위해 연락할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기입한 고객 일지를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해당 일지에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해야 하지만 요구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B. 추적 조사

- 책임 당사자는 현장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체에서 상호 작용한 직원, 방문자 또는 고객이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 및 지역 보건부와 협력하여 작업장의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고 일지에 기록된 모든 직원의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하며,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나 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시점 중 이른 시점부터 48시간 전에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입장한 방문객/고객(해당되는 경우)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연방 및 주 법과 규정에서 명시한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자택 격리 또는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되거나 노출된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했다는 경고를 받고 추적 조사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개인은 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해당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안전 계획을 작성하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주와 운영자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ronavirus (COVID-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십시오.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